Subject: Newsflash of MSC 101

제101차 해사안전위원회(이하 "MSC"라 칭함)가 2019년 6월 5일에서 6월 14일까지 IMO 본부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MSC 101차 주요 사항 및 요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회기에 채택된 SOLAS 및 FSS Code, IGF Code, LSA Code에 대한 개정사항들은 SOLAS 4년 주기 발효제도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고, IBC Code의 경우는 SOLAS에 부속된 코드이기는 하지만 이번 IBC Code 개정이 MEPC 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SOLAS 4년 주기 발효제도를 따르지 않고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됩니다.

또한, 2011 ESP Code 통합본과 IMSBC Code 개정사항의 경우도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와는 별도로, SPS Code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됩니다.

1. 강제 문서 및 비강제 문서들에 대한 개정사항의 채택 (의제 3)

1.1 SOLAS 협약 부록 개정안

Form C(화물선 안전증서의 설비기록부), E(화물선 안전설비증서의 설비기록부), 및 P(여객선 안전증서의 설비기록부)의 8.1 항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 에서 해당 선박에 적용되지 않는 일부 항목들은 삭제할 있도록 주석 "Delete as appropriate"를 새로이 삽입하였다.

1.2 FSS Code 개정안

FSS Code 15 장 2.2.3.2.1, 2.2.3.2.6 및 2.2.4.2.1 항에서 사용되었던 "전방(forward of)"이라는 용어를 "하류(downstream)"라는 용어로 수정하였다.

1.3 IGF Code 주요 개정안

ㅇ 파트 A-1 에서 탱크 방화재료나 그 위치로 인하여 외부 화재로부터 연료유 탱크가 가열될 확률이 낮을 경우 연료유 적재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을 6.8.3 항으로 추가하였다.

ㅇ 파트 A-1 에서 기존에 연료관 한가지로서만 요구되던 연료관의 이중 차폐장치 요건을 기체 및 액체 연료관의 이중 차폐장치에 대한 요건으로 세분화하여 9.5.2 항 이후로 추가하였다.

ㅇ 파트 A-1 의 "10.3 피스톤 타입의 내연기관에 대한 규칙"에 연소장치가 점화된 가스 누설에 의한 과압을 수용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경우 폭발 방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ㅇ 파트 A-1 의 11.3.3 항에서 연료저장장치를 포함하는 공간 사이의 경계는 900mm 폭의 코퍼댐 또는 A-60 으로 방열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였다.

ㅇ 파트 A-1 에서 C 형 탱크의 경우, 연료 저장공간을 코퍼댐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 년 1 월 1 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은 C 형 탱크가 A 류 기관구역 혹은 고위험군의 기타 구역 바로 위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에만 코퍼댐으로 간주하고 C 형 탱크의 외판 또는 탱크 연결 공간(Tank Connection System)의 경계로부터 A-60 경계까지의 최소거리가 90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1.4 LSA Code 개정안

ㅇ 두 개의 별도 엔진과 샤프트 라인, 연료 탱크, 배관 시스템 및 기타 관련 부속물로 구성되는 두 개의 독립 추진 시스템이 장착된 구명정의 경우에도

기존의 4.4.8.1 요건(부양성 노(Oar)에 대하여 쏘울핀(Thole Pins) 또는 크러치(Crutches) 등 관련 장비 제공)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ㅇ 화물선에서 생존정 겸용이 아닌 구조정의 경우 중력 또는 선박동력 공급원과 독립된 축적된 기계적 동력 외에 수동조작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단, 구조정의 무게는 700 Kg 미만으로 제한하고 한 사람에 의해 작동될 수 있어야 하며 최대 크랭크 힘 및 크랭크 회전 반경을 각각 160N, 350mm 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6.1.1.3 항의 내용을 개정하였다.

1.5 IBC Code 주요 개정안

ㅇ 15 장(Special requirements)에 황화수소로 변하기 쉬운 산적액체를 운송하는 선박에는 황화수소 탐지장치를 비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ㅇ 16 장(Operational requirements)에 17 장 표의 column o 에서 16.2.7 항이 언급되는 경우 이 화물은 MARPOL 부속서 2 의 13.7.1.4 규칙에 있는 prewash 요건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ㅇ 이 외에도 17 장의 위험 화학품의 선적을 위한 최소 요구 조건을 기재한 표, 18 장의 IBC Code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위험 화학품 화물의 목록, 19 장의 벌크 형태로 운송되는 위험 화학품 화물의 목록 및 21 장의 IBC Code 적용을 받는 위험 화학품 화물의 운송을 위한 기준 등에 대한 개정 등이 채택되었다.

1.6 IMSBC Code 주요 개정안

IMSBC Code 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 보오크사이트 관련

- 보크사이트(Bauxite)의 TML(운송가능수분한계)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절차를 부속서 2 에 포함
- 그룹 A 의 보크사이트용 개별화물일람표를 IMSBC Code 에 새로이 포함
- 기존의 그룹 C 의 보크사이트용 개별화물일람표 개정

ㅇ 씨드 케이크(SEED CAKE) 관련
- 산소 고갈 문제를 다룬 그룹 B (MHB) 및 그룹 C 씨드 케이크(SEED CAKE)에 대한 개별화물일람표 개정
- 씨드 케이크 UN 1386(a), UN 1386(b) 및 씨드 케이크 UN 2217 에 대한 기존의 개별화물일람표에 대한 개정

ㅇ 금속황화물 정광 관련
- 금속황화물 정광, 자기발화(UN 3190)에 대한 새로운 개별화물일람표를 그룹 A 및 B 에 포함
- 질산암모늄계 비료(비위험성)를 그룹 C 로 남기고 CCC.1/Circ.4 에 포함된 정보를 참조하도록 주석을 추가

ㅇ 기타
- 젖은(wet) 상태에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의 분류 관련 시험방법에 대한 개정 등

1.7 ESP Code 개정안

원래 2011 및 2019 ESP Code 로 두 개의 버전으로 채택될 예정이었던 ESP Code 가 행정적 부담 등에 대한 사무국의 검토 결과, 2011 ESP Code 통합본 하나로 채택되었다.

1.8 BCH Code 주요 개정안

ㅇ 4 장(Special requirements)에 황화수소로 변하기 쉬운 산적액체를 운송하는 선박에는 황화수소 탐지장치를 비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ㅇ 5 장(Operational requirements)에 6 장 표의 column m 에서 5.2.7 항이 언급되는 경우, 이 화물은 MARPOL 부속서 2 의 13.7.1.4 규칙에 있는 prewash 요건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ㅇ 6 장(Summary of Minimum requirements)의 IBC/BCH Code 요건에 대한 "column o"의 교차 참조에 "15.15 4.24" 및 "16.2.7 5.2.7"을 추가하였다.

1.9 SPS Code 개정안

SOLAS 4 장 및 부록(증서) 개정에 따라 MSC 100 은 2020 년 1 월 1 일부로 발효되는 SPS Code 대한 개정을 채택하였고, 동시에 SPS 안전증서 및 안전증서 설비기록부를 최신화 하는 작업(무선장비 목록에 'SART' 와 'AIS-SART'를 추가하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MSC 101 차에서 새로운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2. 자율운항선박(MASS)의 사용에 관한 규정범위 검토작업 (의제 5)

MSC 위원회는 사무국, 회원국 그리고 NGO 에서 제출한 자율운항선박 규정범위 검토작업(이하 'RSE'라 칭함) 및 시범운항 임시지침에 대한 의제 문서를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작업반(Working Group, WG)을 개설하여 시범운항 임시지침을 완성하고 9 월에 개최되는 MSC 회기간 작업반(intersessional MSC Working Group)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 하도록 하였다.

작업반에서는 RSE 초기검토결과를 공유하고 회기간 작업반을 위한 1 단계 RSE 결과보고 양식과 작업범위(TOR)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시범운항 임시지침과

관련하여 제안된 MSC 101/5/5(임시지침 초안 제안) 및 MSC 101/5/6(임시지침 초안 제안의 코멘트) 문서를 바탕으로 시범운항 임시지침의 주요 요건을 논의하고 논의 사항을 반영한 지침을 완성하였다. 동 지침은 MSC 100/WG 에서 동의한 9 개의 임시지침 개발 원칙에 따라 목표기반의 high-level 규정으로 개발되었으며, '리스크 관리', '의무협약 준수', '자율운항 선박 시험과 관련된 인원의 자격 요건', '인적 요인', '안전한 시험을 위한 인프라, '시험 통보', ' 통신 및 데이터 교환', '시험 결과 보고 및 정보 공유', '각 시험의 범위 및 목표' 그리고 '사이버 위험 관리'라는 세부 목표를 갖는다.
2019 년 9 월에 개최될 MASS RSE 를 위한 MSC 회기간 작업반에서는 1 단계 RSE 결과를 검토하고 2 단계 작업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 목표기반 선박건조기준(GBS) (의제 6)

MSC 101 은 GBS 감사활동 현황 관련하여, 터키선급 부적합사항 교정감사, DNV-GL 재검증감사 및 2019 년도 구조규칙 변경사항에 대한 11 개 IACS 선급의 유지보수감사 보고서는 MSC 102 차에 제출될 것임을 주지하였다.

또한, GBS 감사관 지명을 위한 GISIS 기능이 개발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음을 알렸으며, 특정 개인정보를 제외한 GBS 감사관 정보를 담은 GISIS 모듈에 모든 IMO 회원국 및 국제기구가 접근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GBS 개발을 위한 일반지침서 (MSC.1/Circ.1394/Rev.1) 적용 시 논의 되었던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GBS 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MSC 위원회는 기능요구사항 (Functional Requirement) 개발을 위한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Appendix 3 을 새로 추가시킨 GBS 일반지침서의 개정 내용 (MSC.1/Circ.1394/Rev.2)을 승인하였다.

4. 극지해역 운항 Non-SOLAS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논의 (의제 7)

MSC 101 은 극지해역에서의 SOLAS 비적용 선박의 운항을 위한 안전조치에 대한 결과물들을 NCSR 7 의 임시의제에 포함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본 위원회는 또한 NCSR 에 POLAR Code 9 장 및 11 장을 SOLAS 비적용 선박에 적용할 때에 미치는 결과와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SOLAS 및 POLAR Code 의 개정을 포함하여 SOLAS 비적용 선박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는 NCSR 7 에 2019 년 중에 개최예정인 어선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 회의 결과까지 포함하여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5. 연료유 사용관련 선박의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방안 개발 (의제 8)

MSC 101 은 SOLAS 규정상의 최저인화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연료유 사용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문제를 다루기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을 소집하였다.

회기 중 작업반은 인화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 서류작업 및 보고, 최저 인화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것이 적발된 연료유 공급업자에 대한 조치, 시험결과 부적합한 연료유가 공급되었을 때에 선박의 조치사항에 대한 지침 그리고 인화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의 보고를 위한 GISIS 모듈의 개발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추가로, 작업반은 연료유 사용과 관련한 선박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긴급 지침에 대한 MSC 결의 안 초안을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MSC 101 은 위의 MSC 결의안(연료유 사용과 관련한 선박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시 권고안)을 채택하였고, 인화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의 보고를 위한 GISIS 플랫폼 개발에 동의하였다.

마지막으로, MARPOL 부속서 6, 18.9.4 규칙을 고려하여 SOLAS II-2/4.2.1 규칙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연료유를 공급하는 연료유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강제요건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연료유 공급자가 인화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의 보고에 대한 강제 요건 개발 등을 고려하기 위해 통신작업반 설립이 결정되었다.

6. 전문위원회 결과 보고서 (의제 9 ~ 14)

6.1 SOLAS II-1/3-8 규칙의 개정 초안 및 관련 Circular 의 잠정 승인 (의제 12, SDC 6)

3,000 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계류 설비 및 계류라인을 포함한 계류장비는 기구가 개발한 지침에 따라서 선택되고 설계되어야 하고 3,000 톤 미만의 선박은 기국의 국내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SOLAS II-1/3-8 규칙의 개정 초안을 승인하였다. 또한, 동 개정초안은 모든 선박의 계류라인을 포함한 계류장비가 검사 및 그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MSC 101 은 "계류 설비 및 안전한 고박을 위한 적절한 계류 장비 및 피팅(fitting)에 대한 지침" 초안과 "계류 라인을 포함한 계류 장비의 검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지침" 초안에 대하여 MSC 102 에서 SOLAS II-1/3-8 규칙의 채택과 함께 최종 승인을 목적으로 잠정 승인하였다.

6.2 여객선의 선수전방충돌격벽에 사용되는 밸브 요건의 완화(의제 12, SDC 6)

2020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되는 SOLAS 개정안에서는 화물선에만 선수전방 충돌격벽에 버터플라이 밸브 사용이 허용되던 것이 2024 년 발효 예정인 개정안에서는 여객선까지도 확대 허용되는 것으로 내용이 완화되어 승인되었다.

6.3 12 인을 초과하는 산업인력을 수송하는 선박 (의제 12, SDC 6)

SOLAS 제 15 장(IP Code, 산업인력운송기준) 적용 기준을 확정하고, SDC 7 차(2020 년 2 월)에서 SOLAS 개정 초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적용기준은 산업인력, 특수인력, 여객의 합계인원으로 하고, 총합이 12 명을 초과하는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IP Code 를 적용하기로 하는 개정안에 회원국들이 동의하였다.

6.4 SDC 전문위원회 관련 통일해석의 승인 (의제 12, SDC 6)

SDC 전문위원회에서 개발 및 수정된 다음과 같은 통일해석(unified interpretations, UIs)들이 금번 회기에 승인되었다;

- 2008 IS Code 에 대한 수정된 통일해석(MSC.1/Circ.1537/Rev.1)
- 1966 국제만제흘수선협약과 관련된 1988 프로토콜과 관련된 수정된 통일해석(MSC.1/Circ.1535/Rev.1)
- SOLAS II-1 장의 수정된 통일 해석(MSC.1/Circ.1539/Rev.1)
- 침수탐지장비를 위한 여객선의 안전한 귀항과 관련한 SOLAS II-1 규칙과 관련한 통일해석

6.5 SOLAS II-1 장 및 III 장의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지침(MSC.1/Circ.1212) 에 대한 개정 (의제 14, SSE 6)

금번 회기에 "SOLAS II-1 장 및 III 장의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지침" 이 MSC.1/Circ.1212/Rev.1 로 승인되었다. 동 지침은 SOLAS II-1/55 규칙 및 III/38 규칙에서 요구되는 대체설계 및 배치와 관련된 기술적 분석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행의 SOLAS II-1 장 및 III 장의 규범적 요건으로부터 벗어난 특정 기술 또는 구명시스템, 설계 또는 배치 등에 대한 대체설계의 승인에 적용될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다. 금번에 승인된

개정사항은 SOLAS III 장의 목표, 기능요건 및 기대성능에 대한 사항들을 지침의 새로운 부록 5 로 포함하였다.

6.6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구명설비 및 배치에 관한 임시지침 (의제 14, SSE 6)

Polar Code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구명설비 및 배치에 관한 임시지침이 금번 회기에 승인되었다. 동 임시지침은 Polar Code 의 I-A 편의 8.3 절 (구명설비 및 배치)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극지해역 운항 중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한 임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6.7 신조 및 현존 로로여객선의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 내의 화재 발생 및 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지침 (의제 14, SSE 6)

지난 몇 년간 수행된 "신조 및 현존 로로여객선의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 내의 화재 발생 및 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SOLAS II-2 장 및 관련 코드의 검토" 라는 의제의 결과로서 금번 회기에 "신조 및 현존 로로여객선의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 내의 화재 발생 및 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지침"이 승인되었다.

6.8 SSE 전문위원회 관련 통일해석의 승인 (의제 14, SSE 6)

SSE 전문위원회에서 개발한 다음과 같은 통일해석(unified interpretations, UIs)들이 금번 회기에 승인되었다;

- SCR 시스템, EGR 시스템 또는 EGCS 시스템에 사용되는 요소 또는 수산화나트륨 용액 탱크가 위치한 구역의 방화구조의 구획결정을 위한 SOLAS II-2 장에 대한 통일 해석

- IGC Code 의 11.3.6 항(화재의 보호 및 소화, 워터스프레이 시스템) 및 11.4.8 항(화재의 보호 및 소화, 워터스프레이 시스템, 드라이 케미컬 파우더 소화시스템)에 관한 통일해석
- 구명정, 구조정 및 고속구조정, 진수장치 및 이탈장치에 대한 5 년간격 정밀검사, 분해검사 및 작동시험에 관한 통일해석과 MSC.1/Circ.1331 에 따라 표시등(light)과 구명줄(lifeline)을 모두 부착한 구명부환에 대한 통일해석
- 비전통적인 방식의 추진 및 조타 겸용의 특별한 시스템을 장착한 선박의 조타성능에 대한 배치와 관련된 SOLAS II-1/28, II-1/29 및 II-1/30 규칙의 통일해석

7. 기타사항 (작업계획)

7.1 SOLAS 구명동의의 수중 성능기준

MSC 101은 SOLAS 구명동의의 수중 성능에 관해 LSA Code 및 MSC.81(70)의 검토를 제안한 문서에 대해 논의하고 "SOLAS 구명동의의 수중 성능을 다루기 위한 LSA Code 및 결의서 MSC 81.(70)에 대한 개정안 개발"이라는 작업의제를 SSE 2개년 과제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7.2 전자경사계의 성능기준

MSC 101은 전자경사계의 성능기준(MSC.363(92)을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에서 의무화하기 위해 SOLAS 개정을 제안한 문서에 대하여 논의하고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에서 전자경사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SOLAS 개정안의 개발"이라는 작업의제를 NCSR 2개년 과제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7.3 VDR 및 관련 성능기준

MSC 101은 모든 VDR 및 S-VDR 에 자동 부양을 요구하도록 SOLAS V/20 규칙의 개정을 제안한 문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본 위원회는 선박용 VDR 에 관한 수정된 성능 기준의 채택에 대한 결의안 MSC.333(90) 및 선박용 S-VDR 의 성능 기준에 대한 결의안 MSC.163(78)이 제어구역과 선교간에 대화하는 내용의 녹음을 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고 이 작업의제들을 NCSR 2개년 과제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협약업무팀장

담당자:
허강이 책임검사원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Tel: +82 70 8799 8322
Fax: +82 70 8799 8339
E-mail: convention@krs.co.kr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